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재공고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부 천 시 장

1. 사업개요

- 목 적 : 부천시 내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
-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또는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부천시 관내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경기도 기업환경개선사업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기업
- 지원요건 : 총사업비 3백만원 이상 사업

○ 지원제외

- 정부, 경기도, 시군이 추진하는 유사 사업(휴게시설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 중복지원인 경우
-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3년 이상 임차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휴게시설 신설** : 개소당 최대 3,000만원
 - **휴게시설 개선** : 개소당 최대 2,000만원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 개소당 최대 4,000만원
 - * 공동휴게시설 :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외 주로 밀집한 공장 등 **2개 기관 이상**이 공동사용 하는 휴게시설
 - 단, 자부담은 보조금 기준 20% 의무 부담,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충당
 - 과세사업자의 부가세는 기업이 사업비(보조금+자부담)외 별도 부담
 - 지원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또는 개선 공사
-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를 지원하며,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하여 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u>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 제외</u> ※ 경기도 및 부천시 지원 확인을 위한 현판, 스타커 등을 제작·부착 / 물품구입은 보조금 50% 이내
- 휴게시설 공간확보, 공사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하며, 해당 시설은 사업완료 후 **3년간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관리·사용**해야 함. ※ 미준수 시 보조금 전액 반납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12.(수) 18:00까지(9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 전자파일은 이메일(lhi622@korea.kr)로 제출 가능
 - 우편신청의 경우 2025. 3. 12.(**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부천시청 일자리정책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2층)

- 제출서류 : 목록순서로 제본
 - ① 사업신청서
 - ② 사업계획서(휴게시설 현장사진, 견적서 등 포함)
 - ③ 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④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⑤ 기타 증빙서류(4대보험 납부증빙서류(사업장 가입자 명부, 완납증명서),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3년치) 등)

< 공동휴게시설 신설(개선) 신청 >

- · 2개 이상의 기관(대표기관 1개, 참여기관 1개 이상) 중 대표기관 선정
- · (대표기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 (참여기관) 등록증, 결산보고서, 기타증빙서류 제출 ※ 대표기관·참여기관 모두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4. 선정절차

- **서면심사** : 신청기관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서류 심사
- **현장조사** :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제반여건 확인
 - 신청기관 현황(정규직 비율, 수혜인원 등), 사업의 시급성(시설상태 등) ※ 방문일정 사전 혐의 예정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사
 - 일시 및 장소 추후 개별 공지
 - 관계부서, 민간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
 - 선정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해 지원대상 기관(기업) 선정

분야	심사항목	배점
업체현황	. 운영기간, 업체의 영세성(노동자수)	20
사업내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역량, 사후관리의 적정성 및 구체성	60
시 급 성	. 시설 상태(시설 노후도 등)	20
가 점	. 섬유(염색)업종(5), 공동휴게시설(3), 생활임금 서약기업(2)	10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2025. 4. 예정

5. 결과발표 : 2025. 4월 중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부천시 홈페이지 게재

6. 기타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부터 정산까지 모든 업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자세한 내용은 선정 통보 시 안내 예정)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함
- 타기관(부서)의 사업과 중복 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 032-625-27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일정 등은 내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